

의안번호	2218378
의 퇴 인	김용태 의원
회 답 일	2026. 8. 20.
추계번호	26B216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1항 (보상의 범위 등)	「기상법」 제13조의2 ¹⁾ 에 따라 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이를 재해보험 보상의 범위에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11조제3항 (손해평가 등)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은 품목별·재해별·시기별로 조사하되,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 발병 등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고려하여 영상분석과 광학기기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함	의무규정

-
- 1) 「기상법」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1항 (보상의 범위 등)	—	• 미대상 – 기상특보가 발표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현행법 제2조제1호 ²⁾ 및 시행령 [별표1] ³⁾ 에 따라 이미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재정 소요 미 발생 예상
2	안 제11조제3항 (손해평가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방식 개선(안 제11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3)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 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등을 기초로 보상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작물·임산물 등의 품질 저하에 따른 손해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수확량 중심의 손해평가 외에 품질 저하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절차가 신규로 추가되어야 함. 이에 따라 영상분석 및 광학기기 등 전문 장비 구입·유지관리비, 추가 조사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현장조사 및 품질분석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평가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 시점에서는 품목별 품질 피해의 평가대상 및 품질 특성, 객관적인 측정기준과 평가방법이 구체화되지 않고, 현장 조사 및 품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규모, 추가 투입 인력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업무에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연구개발의 세부 내용과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수 없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na.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표 1]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현황: 2026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8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식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20품목)	고구마, 옥수수, 콩,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배추, 무, 포도, 보리,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벼, 대파, 사과, 배, 시설작물(대파, 수박)	순보험료의 43~6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명게, 뱀장어, 미역 등	운영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⁴⁾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	대상 품목(품종/작형)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뽕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투(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투(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투(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투(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투(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투(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투(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투(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투(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대파/쭈파·싹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팔,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투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2026	오이, 시설투(갯잎)	78
합계	78개 품목	

4)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농업수입안정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감자(가을)	6
2018	양배추(월동)	7
2024	보리, 옥수수	9
2025	감자(봄,고랭지), 벼, 배추(가을), 무(가을),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양배추(가을)	15
2026	사과, 배, 대파, 시설펀(대파,수박), 무(봄,고랭지,월동), 배추(봄,고랭지,월동)	20
합계	20개 품목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보험 대상품목(총 30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3):**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팽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미역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방어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흰다리새우	충남 당진시,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대상품목) 78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

* ('01년) 2개(사과·배) → ('18) 57 → ('19) 62 →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26) 78

□ (사업내용)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

□ (사업예산) '26년 6,008억원(미지급금 포함)

(단위: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합계	4,356	6,719	7,065	6,344	5,770	6,008
보험료지원	3,519	5,621	6,077	5,356	4,842	5,017
운영비지원	837	1,098	988	988	928	991

□ (가입실적) '12년 이후 가입 증가*, '24년 가입률 54.2%

* ('12) 13.6% → ('19) 38.8 →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0 → ('24) 54.2 → ('25) 54.0

□ (지급실적) '01~'25년까지 총 8조 5,791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보험금) '25년 26.6만 농가 대상 보험금 1조 3,357억원 지급

* ('19) 8,980억원 → ('20) 10,158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24) 10,208 → ('25) 13,357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01년 이후 '24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108.8% 기록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 ('24) 97.9 → ('25) 119.9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97~)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대상축종) 가축(16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사업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 (사업예산) '26년 1,102억원

(단위: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예산	1,122	1,191	1,191	1,191	1,122	1,099	1,102

-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 (가입실적) '25년 기준 가입률 96.4%(가입두수 306,316천두) 수준

* ('01) 21.7%→('20) 92.8→('21) 93.7→('22) 94.7→('23) 94.4→('24) 95.4→('25) 96.4

- (지급실적) '97~'25년까지 총 2조 3,553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금) '25년 16개 축종, 12천 농가, 보험금 2,275억원 지급

* ('19) 1,743→('20) 1,477→('21) 1,462→('22) 1,679→('23) 1,648→('24) 2,013→('25) 2,275

- (손해율) '18년 이후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

* ('18) 156.1→('19) 99.6→('20) 80.8→('21) 78.9→('22) 93.0
→('23) 94.2→('24) 111.1→('25) 121.3

[참고자료 4]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5년 15개 품목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24) 9(+옥수수·보리) → ('25) 15(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 ('25) 20(사과, 배, 시설대파, 시설수박, 대파, 봄/고랭지/월동무·배추)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시장가격하락 등

□ (사업예산) '26년 2,752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예산 (마지급금)	3,159	4,649	4,649	5,149	5,100 (7년 182)	5,257 (1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275,181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6,910	85,551	275,181

□ (가입실적) '15~'25년 동안 총 62,685ha, 52,153 농가 가입

○ '25년 사업 본격 운영에 따른 가입률 대폭 증가*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 ('24) 3.9 → ('25) 19.0

○ '25년 기준 총 15개 품목 44,141ha, 31,018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5년 동안 총 29,989 농가에 보험금 1,52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86.5%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24) 76.6 → ('25) 55.1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4) 63 → ('25) 575

○ '25년 기준 총 15개 품목 15,606 농가에 보험금 575억원 지급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황)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입('08),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재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위험 분담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30개)
 - 본사업: 넙치, 전복, 해삼가두리어류 등 17개 품목
 - 시범사업: 김, 미역, 멥게 등 13개 품목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조류,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치위험, 이상조류·고수온·저수온·수질, 조수, 양식시설물
- 보장수준
 - 수산물: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보험가입금액 이내)
 - 시설물: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 (지원)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국비 50%, 지방비 20~30%) 및 운영비 전부(100%)를 지원

* 예산: ('20) 268억원 → ('21) 283억원 → ('22) 253억원 → ('23) 230억원 → ('24) 241억원 → ('25) 250억원 → ('26) 248억원

- (가입) 정부가 지원하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物的)보험이고,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험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보험, 어선원보험)

** 가입자 수(가입률): ('20) 3,744어가(39.1%) → ('21) 2,682(28.0) → ('22) 2,733(37.0) → ('23) 2,936(39.8) → ('24) 2,926(39.7) → ('25) 3,095(41.5)

- 추진절차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해 상품개발, 가입 및 보험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 수행,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감독 및 우리부에서 국고 보조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5	655,456	601,075	54.0	1,212,754	577,111	47.6%	156,486	333,348	40.4%	145,809	12.0%	185.0	22.2	292,226	1,335,701
2024	676,226	589,676	54.2	1,141,145	544,222	47.7%	145,285	307,424	39.7%	144,213	12.6%	168.8	21.3	263,766	1,020,784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5	306,316	40,778	96.4	229,333	111,534	48.6%	8,459	21,890	13.2%	87,452	38.1%	74.9	28.5	43,742	227,494
2024	298,222	38,631	95.4	221,593	107,414	48.5%	7,954	20,208	12.7%	86,017	38.8%	74.3	28.8	44,881	201,344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수입안정보험(구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5	44,141	31,018	19.0	117,213	57,692	49.2%	15,896	25,680	35.5%	17,945	15.3%	265.5	40.7	17,554	57,468
2024	2,649	3,297	3.9	9,001	4,500	50.0%	1,005	2,542	39.4%	953	10.6%	339.8	36.0	2,061	6,329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건, 백만원)

연도	가입두 수 (천두)	가입 건수 (건)	보험 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 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38	726	7.2	3,191	1,596	50%				1,596	50%	83,452,243	41,726,122	27,935	2,453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90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65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92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716	13.3	2,265	1,132	50%				1,133	50%	72,932,425	36,478,559	7,783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75	35,838,838	63	7

주: 1) '25년 이전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25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²⁾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26	39.7	30,013	15,049	50	3,760	5,917	32	5,287	18	1,807	7,301	289	31,368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